

의안 번호	1959	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7. 1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7. 1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7. 29.(금)

2. 제안이유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2022. 1. 27.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외래어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변경
 - 「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」 → 「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」
- 나. 사용시간 및 사용료 구체화(안 제4조)
 - 사용시간 구체적 명시 및 예외사항 추가
- 다.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(안 제5조)
 -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해당자
- 라. 사용자 준수사항 강화(안 제6조)
 - 구의 후원 또는 협조가 필요한 민간행사는 행사주관부서를 통해 신청
 - 안전관리인 지정: 안전사고예방, 방역수칙 준수 등(별표 2)

마. 사용제한 구체화(제8조)

- 종교행사, 정치적 목적의 행사
-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

바. 사용료 반환 절차와 방법 구체화(안 제10조)

-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름

4. 근거법규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~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외래어 제명을 변경하고,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 구체화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 하며,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(2022. 1. 27.)에 따른 안전관리인 지정 및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② 제1항제1호·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